

2014년도 언론중재위원회 정책심포지엄
종합보고서

인터넷 공간의 잘못된 기사와 새로운 피해구제 방안

일시 | 2014. 12. 4.(목) 14:30~17:00

장소 | 프레스센터 18층 서울외신기자클럽



2014년도 언론중재위원회 정책심포지엄 종합보고서

인터넷 공간의 잘못된 기사와 새로운 피해구제 방안

■ 일시 : 2014년 12월 4일(목) 14:30~17:00

■ 장소 : 프레스센터 18층 서울외신기자클럽



국민과 언론을 이어주는 —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박용상입니다.

바쁘신 중에 오늘 이렇게 시간을 내어 저희 위원회 정책심포지엄에 참석하신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변화하는 인터넷 미디어 환경에 적극 대처하고자 “인터넷 공간의 잘못된 기사와 새로운 피해구제 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의 비약적인 발전은 언론환경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인터넷의 편리함과 신속성으로 인해 인터넷을 통해 다양하고 풍부한 뉴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인터넷 미디어의 영향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뉴스 정보가 신속하게 복제되고 전파될 수 있는 만큼 인격권을 침해하는 보도 역시 신속하게 확산될 수 있어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

나 용이하게 이를 전파할 수 있기 때문에, 언론사 웹사이트에서는 삭제가 되었음에도 일부 잘못된 기사가 인터넷 이용자에 의해 블로그나, 카페 등에 옮겨져 계속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침해적 뉴스들은 아카이브 형태로 웹에 올려져 존재를 유지할 뿐 아니라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놀라운 검색 기술에 의해 용이하게 열람될 수 있습니다. 아날로그 시대에 한번 공표되면 쉽게 망각되었을 정보가 사라지지 않고 언제나 누구에 의해서나 용이하게 검색·열람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를 보면 위법한 침해적 뉴스는 말소되지 않는 한 가히 그 영향을 지속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아날로그 시대에 제정된 우리의 언론법제가 이러한 변화에 올바르게 대응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현행 언론중재법은 피해 구제를 위한 조정신청 기간을 보도 후 최대 6개월까지로 한정하고 있고, 정정보도·반론보도 등 전통적 피해구제제도에만 의존하고 있어, 변화된 매체 환경에서 인격권 침해 현상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습니다.

지난 5월 유럽사법재판소가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도 이러한 문제상황에 대처하려는 노력의 일단이라고 생각되고, 이와 관련하여 사이버 상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 역시 지난해 2013. 3. 28. 인격권의 대세적 성질에 기해 인격권을 침해하는 상태를 조성·지배하는 자에 대해 그 방해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허위사실을 포함하는 침해적 보도의 삭제를 명하는 판결(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인격권의 중요한 효과로서 그 방해자의 주관적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그 인격권주체가 생존하는 한 시효로 소멸되지 않는 방해배제청구권을 새로이 인정한 것이고, 변화되는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법적으로 대응하는 새로운 단초를 제공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SNS를 이용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뉴스전달 서비스가 출현하고 있으며, 그에 의한 피해를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가 새로운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미디어 환경 변화와 관련하여 현재의 법과 제도의 문제를 살펴보고,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의 보호 사이에서 지혜로운 조화를 도모하면서 법과 현실의 괴리를 줄일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이러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책심포지엄에 흔쾌히 발제를 맡아주신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님, 사회를 맡아 진행해주실 양승목 중재위원님, 지정토론자로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박정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님, 심석태 SBS 뉴미디어부장님, 이준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수석부회장님, 정혜승 다음카카오 정책파트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석하신 여러분의 기탄없는 의견을 기대하며, 여러분 모두에게 더없이 유익하고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2월 4일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박용상

목 차

〈주 제〉 인터넷 공간의 잘못된 기사와 새로운 피해구제 방안

| | |
|--|----|
| I. 언론매체 환경의 변화와 인터넷 기사의 급증 | 3 |
| 1. 언론매체 환경의 변화 | 3 |
| 2. 인터넷 기사의 급증 | 4 |
| II. 인터넷 기사로 인한 피해 유형 | 6 |
| 1. 인터넷 기사로 인한 피해의 형식적 분류 | 6 |
| 2. 인터넷 기사로 인한 피해의 내용적 분류 | 11 |
| III. 일반적인 인터넷 정보에 대한 구제수단 | 13 |
| 1. 위법한 명예훼손 정보(⑤)에 대한 구제수단 | 13 |
| 2. 부적절하게 된 (개인)정보에 대한 구제수단 | 16 |
| IV. 인터넷 기사에 대한 새로운 구제수단의 필요성 | 22 |
| 1. 기존 구제수단의 정리와 그 공백 | 22 |
| 2. 새로운 구제수단의 필요성 | 26 |
| 3. 잊혀질 권리에서 정보갱신권으로 | 36 |
| V. 새로운 구제수단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 40 |
| 1. 위법한 명예훼손 기사나 정보·부적절한 기사나 정보의 삭제청구 | 40 |
| 2. 부적절하게 된 기사나 정보의 갱신청구 | 41 |
| 3. 삭제청구·갱신청구와 기존의 정정보도청구·추후보도청구의 관계 | 42 |
| 4. 인터넷 기사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 43 |
| VI. 신 뉴스미디어 기사에 대한 구제수단 | 43 |
| 1. 신 뉴스미디어 기사의 법적 취급 | 43 |
| 2. 신 뉴스미디어 기사에 대한 구제수단 | 44 |
| VII. 결 어 | 45 |
| ▶ 토론내용 | 47 |

인터넷 공간의 잘못된 기사와 새로운 피해구제 방안

김 경 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

인터넷 공간의 잘못된 기사와 새로운 피해 구제 방안

- 인터넷 기사에 대한 정보법적 접근 -

김 경 환(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

I. 언론매체 환경의 변화와 인터넷 기사의 급증

1. 언론매체 환경의 변화

언론매체의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인터넷 환경의 보급으로 말미암아 언론소비의 형태는 신문·잡지 등과 같은 ‘구독식’의 ‘아날로그 형태’에서 인터넷신문·포털뉴스 등과 같은 ‘전송식’의 ‘디지털 형태’로 바뀌고 있다. 특히 2000년대 말부터 시작된 모바일의 보급은 더더욱 이런 현상을 가속시키고 있다.

이러한 언론매체 환경의 변화는 등록 언론사의 통계로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 구분 | 정기간행물 등록건수 |
|-------|------------|
| 일간신문 | 363 |
| 통신 | 15 |
| 기타일간 | 353 |
| 주간 | 3,138 |
| 월간 | 4,697 |
| 격월간 | 646 |
| 계간 | 1,408 |
| 연2회 | 506 |
| 인터넷신문 | 4,916 |
| 계 | 16,042 |

<2013년 정기간행물 등록현황(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의 발달로 인해 2013년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인터넷신문은 4,916종이고, 포털뉴스는 200종에 달한다. 인터넷신문의 등록 수는 일간신문의 13.5배나 되고 있다. 이러한 수치적 증가에는 완화된 인터넷신문의 등록요건도 기여하고 있다. 현행 신문법 시행령상 취재 및 편집인력 3명 이상(취재기자 2명 포함)을 상시 고용하고, 주간게재기사 건수의 30% 이상을 자체 생산 기사로 게재하는 요건만 충족하면 인터넷신문사로 등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언론매체의 환경이 변화하다 보니, 인터넷신문이나 포털뉴스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실제 인터넷신문이나 포털뉴스로 인한 피해구제 신청은 신문·방송보다 4~6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2013년도 1월부터 2014년도 7월까지 인터넷언론이나 포털에 대한 언론중재위 피해구제신청은 전체의 64.4%(4,231건 중 2,726건), 1일 평균 4.72건에 달하여, 일간신문의 603건(일 평균 1.05건), 방송의 456건(일 평균 0.79건)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2. 인터넷 기사의 급증

인터넷신문의 증가로 인하여 인터넷 기사는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신문에 대하여만 다루는 것은 아니고 언론생산자의 형태에 상관없이 인터넷으로 유통되는 기사에 대하여 다루고자 한다.

현재 일간신문사나 방송사 등 거의 모든 매체들 역시 인터넷 기사를 생산하고 있고, 개별 인터넷신문이 하루에 생산하는 인터넷 기사에 비하여 일간신문사들이나 방송사들이 하루에 생산하는 인터넷 기사의 양은 수백에서 수십배 정도 되기 때문이다.

누가 언론 기사의 생산자인지, 막상 언론 기사가 인터넷 공간에 올라가 디지털

화된 인터넷 기사가 되면 사실상 동일한 성질을 가지게 된다. 즉 디지털 정보와 인터넷이라는 공간의 고유한 특징에 영향을 받게 된다.

디지털 정보의 공학적 의미는 연속적인 실수가 아닌 이산적인 수치로서 표현되는 정보이다. 디지털 정보는 통상 전자기록 형태로 유지된다. 디지털 정보는 아날로그 정보에 비하여 복제가 용이하고 무제한 복제할 수 있으며, 무제한 복제가 된 이후에도 원본과 복제물의 가치나 형태는 변화가 없고, 정보의 저장·편집이나 처리 등이 매우 용이하다.

인터넷의 공학적 의미는 전 세계의 컴퓨터가 서로 연결되어 TCP/I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Internet Protocol)라는 통신 프로토콜을 이용해 정보를 주고받는 네트워크이다. 인터넷은 인류에게 또 하나의 소통 채널이자 전 세계인을 간단한 방법으로 연결시키는 공간으로서, 그리고 정보의 바다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인터넷에 올린 정보는 짧은 시간에 퍼져나가 거의 같은 시간에 전 세계인이 볼 수 있으며, 나아가 실시간으로 대화와 교류를 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은 익명성과 개방성을 전제로 하는바,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극대화시키는 순기능을 가진다.

이러한 디지털 정보와 인터넷 공간은 개인과 기업에게 막대한 영향을 주면서 국가의 경제성장과 기업의 효율성 증대, 국민의 생활향상에 이바지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류에게 어두운 면을 제공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잘못된 정보, 허위 정보, 명예훼손 정보의 파급력 및 영향력 극대화이다.

디지털 정보의 형태를 가진 정보가 인터넷을 만나는 순간, 일단 인터넷의 무지막지한 전파성으로 인해, 한번 올라간 디지털 정보에 대하여는 정보게시자의 제어가 불가능하게 된다. 덕분에 디지털 정보의 양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지만, 잘못된 정보나 허위 정보·명예훼손 정보 역시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고통 받는 사람들도

증가한다. 나아가 검색엔진의 발달로 인해, 인터넷 공간에 올라간 디지털 정보는 언제 어디서나 쉽게 검색하여 접할 수 있게 된다. 덕분에 디지털 정보에의 접근성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모두 뛰어넘었지만, 잘못된 정보나 허위 정보·명예훼손 정보 역시 손쉽게 모두에게 노출되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잘못된 정보, 허위 정보, 명예훼손 정보에 ‘기사’, ‘언론’이라는 정체성까지 더해지면 그 영향력은 상상 이상이 된다. 단순한 디지털 정보와 달리 기사의 형태를 띤 디지털 정보는 신뢰도가 훨씬 높기 때문이다.

결국, 디지털 정보, 인터넷 공간, 기사라는 세 가지 막대한 영향력의 요소를 모두 가진 결합체인 인터넷 기사는, 그 정보의 내용이 잘못된 정보이거나 허위 정보, 명예훼손 정보일 경우 당사자인 개인의 삶에 매우 큰 타격을 주게 되며, 때문에 그에 대한 피해구제 방법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게 되었다.

II. 인터넷 기사로 인한 피해 유형

1. 인터넷 기사로 인한 피해의 형식적 분류

인터넷 기사 역시 언론기관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에 의한 정정보도청구(제14조), 추후보도청구(제17조)에 의한 구제가 가능하다. 다만 이러한 정정보도청구·추후보도청구는 전통적인 신문·방송 등을 고려하여 만든 구제수단이라는 점에서 영구적으로 존재하는 인터넷 기사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다.

예컨대 정정보도청구·추후보도청구는 대체로 인식일로부터 3개월 또는 게재일로부터 6개월이라는 제척기간이 존재하지만, 이러한 짧은 제척기간은 인터넷 기

사에 대하여는 적절하지 않다. 즉 잘못된 인터넷 기사나 허위 보도로 인한 피해는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확대되는데도, 여전히 오프라인·방송 기사에 대한 구제수단의 기준을 기사를 지속적으로 저장하면서 검색엔진을 통하여 언제든지 손쉽게 표출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도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느냐는 문제점이 있다.

이런 문제점은 기사의 유효 기간과 관련이 있다. 전통적인 신문·방송 등의 유효 기간을 고려하여 정정보도청구·추후보도청구의 제척기간을 단기간으로 설정하였지만, 인터넷 기사의 유효 기간은 영구적으로 정할 수 있고 인터넷 공간에의 게재 이후 거의 영원히 접근할 수 있기에, 단기 제척기간은 인터넷 기사의 실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고려하여 전통적인 정정보도청구·추후보도청구의 구제수단으로 해결할 수 없는 형태의 피해 유형, 즉 인터넷 기사로 인한 피해 유형 중 기존의 구제수단으로 해결될 수 없는 피해 유형을 형식적으로 분류하여 예시하면 아래와 같다.

- 1) 정정보도청구·추후보도청구가 인용된 원 기사의 복제글 또는 링크
- 2) 정정보도청구·추후보도청구 기간이 도과한 피해유발 인터넷 기사
- 3) 정정보도청구·추후보도청구 기간이 도과한 피해유발 인터넷 기사에 대한 복제글·링크
- 4) 피해유발 1인 미디어 기사 및 그에 대한 복제글·링크
- 5) 위 4가지 유형에 대한 검색결과
- 6) 피해유발 신 뉴스미디어 기사(예 : 카카오토픽, 다음 뉴스편당), 그에 대한 복제글·링크, 검색결과

여기서 말하는 ‘피해유발 기사’란, 가) 고의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법원의 기준

에 의해 명예훼손으로 인정되는 기사¹⁾, 나) 허위이지만 작성자가 사실이라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기사, 다) 사실을 적시한 기사, 라) 처음에는 적법했으나 시간·상황의 변화에 따라 부적절하게 된 기사 중, 가), 나), 라)를 가리킨다.

위와 같은 1)부터 5)까지의 5가지 형태는 전통적인 정정보도청구·추후보도청구의 구제수단으로는 피해구제를 할 수 없다. 따라서 5가지 형태에 대하여 새로운 구제수단이나 잊혀질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다만 6) 신 뉴스미디어는 법적 지위나 구제수단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수 있어 일단 5가지 형태에 대한 새로운 구제수단을 검토한 후 따로 검토하기로 한다.

1) 내지 5) 형태에 대한 새로운 구제수단을 도입함에 있어서는, 먼저 1) 내지 5) 형태의 각 법적 지위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모두 인터넷 기사에 관한 것이긴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언론법이 곧바로는 적용되지 않는 영역도 있기 때문이다.

1) 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보도가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그 보도가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보아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하는데, 당해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 특히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이를 주요 임무로 하는 언론보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 비로소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며,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으므로,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언론보도로 인하여 그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더라도, 그 보도의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그 보도로 인하여 곧바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

1) 정정보도청구·추후보도청구가 인용된 원 기사의 복제글 또는 링크의 법적 지위

정정보도청구·추후보도청구가 인용된 원 기사를 퍼 나른 게시글 또는 링크는 언론 기사에 관한 것이지만, 이는 언론이라 할 수 없다. 게시글이나 링크를 만든 사람은 언론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단지 인터넷 정보에 해당하는바 언론법이 아닌 정보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된다.

2) 정정보도청구·추후보도청구 기간이 도과한 피해유발 인터넷 기사의 법적 지위

이는 언론기관이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언론법에 의하여 규율을 받는다. 다만 정정보도청구·추후보도청구 기간이 도과하였기에, 새로운 구제수단이 있어야만 피해자의 구제가 가능하다.

3) 정정보도청구·추후보도청구 기간이 도과한 피해유발 인터넷 기사의 복제글·링크의 법적 지위

이는 인터넷 정보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언론법이 아닌 정보법에 의한 규율을 받는다.

4) 피해유발 1인 미디어 기사 및 그에 대한 복제글·링크의 법적 지위

1인 미디어란 언론기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의 기사를 의미하는데, 언론법적으로는 1인 미디어 기사를 언론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인터넷 정보로 취급하여 정보법에 의한 규율을 해야 할 것이다.

5) 위 4가지 유형에 대한 검색결과의 법적 지위

위 4가지 유형에 대한 검색결과의 법적 지위는 1) 내지 4)의 결과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예컨대 『1) 정정보도청구·추후보도청구가 인용된 원 기사의 복제글 또는 링크』는 인터넷 정보이므로 1)에 대한 검색결과 역시 인터넷 정보로 보아 정보법에 의한 규율을 하는 것이고, 『2) 정정보도청구·추후보도청구 기간이 도과한 피해 유발 인터넷 기사』는 언론이므로 2)에 대한 검색결과 역시 언론으로서 언론법에 의한 규율을 하면 된다. 『3) 정정보도청구·추후보도청구 기간이 도과한 피해유발 인터넷 기사의 복제글·링크』는 인터넷 정보이므로 3)에 대한 검색결과는 인터넷 정보에 해당하고, 『4) 피해유발 1인 미디어 기사 및 그에 대한 복제글·링크』 역시 인터넷 정보이므로, 4)에 대한 검색결과도 인터넷 정보에 해당한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 | |
|--|----------------------------|
| 정정보도청구·추후보도청구가 인용된 원 기사 | 1) 그 복제글 또는 링크 ⇒ 정보에 해당 |
| | 5) 그 검색결과 ⇒ 정보에 해당 |
| 2) 정정보도청구·추후보도청구 기간이 도과한 피해유발 기사 ⇒ 언론에 해당 | 3) 그 복제글 또는 링크 ⇒ 정보에 해당 |
| 5) 그 검색결과 ⇒ 언론에 해당 | 5) 그 검색결과 ⇒ 정보에 해당 |
| 4) 피해유발 1인미디어 기사 ⇒ 정보에 해당 | 4) 그 복제글 또는 링크 ⇒ 정보에 해당 |
| 5) 그 검색결과 ⇒ 정보에 해당 | 5) 그 검색결과 ⇒ 정보에 해당 |

다만 1), 3) 및 그에 대한 5) 검색결과는 인터넷 정보이기는 하지만, 그 내용은 언론기사이므로 정보법뿐만 아니라 언론법도 함께 고려하여 구제수단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2. 인터넷 기사로 인한 피해의 내용적 분류

인터넷 기사를 내용면에서 분류하면, 가) 허위 명예훼손 기사, 나) 허위이지만 작성자가 사실로 믿은 명예훼손 기사, 다) 사실 명예훼손 기사, 라) 시간·상황의 변화로 부적절하게 된 기사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다) 사실 명예훼손 기사는 적법한 기사이므로 구제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없고, 나머지 가), 나), 라)에 대하여는 구제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가) 허위 명예훼손 기사는 위법한 명예훼손 기사이므로 구제의 필요성이 있으며, 나) 허위이지만 작성자가 사실로 믿은 명예훼손 기사는 사실이 입증됨에 따라 부적절한 기사로 파악될 수 있고, 라) 시간이나 상황의 변화로 부적절하게 된 기사 역시 사후적 관점으로는 부적절한 기사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인터넷 기사 내지 그 파생글들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언론의 지위를 가진 경우와 정보의 지위를 가진 경우가 있을 수 있는바, 각각의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구분 | 가) 고의로 허위사실 적시한 명예훼손 글 | 나) 사실로 믿고 허위사실 적시한 명예훼손 글 | 다) 사실 적시한 명예훼손 글 | 라) 사후적으로 부적절하게 된 글 |
|----|------------------------|---------------------------|------------------|--------------------|
| 언론 | ① 위법한 명예훼손 기사 | ② 부적절한 기사 | ③ 적절한 기사 | ④ 부적절하게 된 기사 |
| 정보 | ⑤ 위법한 명예훼손 정보 | | | ⑥ 부적절하게 된 정보 |

결국 인터넷 기사 내지 그 파생글이 언론의 지위를 가진 경우 중 구제수단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는 가), 나), 라)의 경우에 해당하는 ① 위법한 명예훼손 기사, ② 부적절한 기사, ④ 부적절하게 된 기사의 경우이다.

반면 인터넷 기사 내지 그 파생글이 정보의 지위를 가진 경우는 가), 나), 다), 라)의 경우가 ⑤ 위법한 명예훼손 정보와 ⑥ 부적절하게 된 정보의 두 가지 유형으로만 나뉘는바, 특히 다)의 경우에도 구제수단의 검토가 필요하게 된다. 이처럼 언론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와 정보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정보통신망법이 사실의 적시이든지 허위의 적시이든지 상관없이 명예훼손의 결과를 일으키는 정보는 모두 위법한 명예훼손 게시글로서 불법정보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²⁾

하지만 복제글, 링크, 일부 검색결과 등과 같이 정보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인터넷 기사 원본 즉 언론이 투영된 것이므로 언론의 성격을 완전히 지우고 바라보기는 어려운바, 구체적인 구제수단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아래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인터넷 기사로 인한 피해유형에 대한 형식적 분류와 내용적 분류’를 전제로, 인터넷 기사로 인한 피해의 새로운 구제수단을 논할 텐데, 이에 앞서 먼저 일반적인 인터넷 ‘정보’에 대한 구제수단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2) 다만 실무적으로, 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처벌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예컨대 언론 기사도 그러한 경우이고, 고객이 올린 업체에 대한 평가글도 그러하다. 후자에 관한 대표적인 판결로서는 산후조리원 판결(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이 있다.

Ⅲ. 일반적인 인터넷 정보에 대한 구제수단

1. 위법한 명예훼손 정보(㉔)에 대한 구제수단

가. 불법정보의 개념

인터넷 정보는 적법정보와 불법정보(유해정보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로 나눌 수 있고, 불법정보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에 아래와 같이 개념정의되어 있다.

- 1호.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 2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 3호.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 4호.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 5호.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 6호.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 7호.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 8호.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 9호.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불법정보의 구제수단은 위와 같은 각 정보의 성질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

지만, 본 연구에서는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2호 정보 포함)에 국한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나.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정보에 대한 구제수단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삭제 요청 및 게시중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1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하고,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다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같은 조 제4항).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직권 조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 조치를 할 수 있다(제44조의3 제1항).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하여는 제44조의2 제2항 후단, 제4항 후단 등을 준용한다(같은 조 제2항).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성명·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말한다)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제44조의6 제1항).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위 청구를 받으면 해당 이용자와 연락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조 제2항, 제3항).

4) 방송통신위원회의 삭제 명령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같은법 제44조의7 제2항 본문).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취급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단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위 명령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게시판 관리·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에게 미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같은법 제44조의7 제4항 본문). 다만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의견청취가 뚜렷이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단서).

5)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둔다(같은법 제44조의10 제1항).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을 준용한다(같은 조 제3항).

2. 부적절하게 된 (개인)정보에 대한 구제수단

한편 인터넷 정보 중 부적절하게 된 정보에 대한 구제수단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부적절하게 된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가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가 있다.

어차피 인터넷 기사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정보주체는 국가나 기업이 아닌 개인이고, 국가나 기업은 적극적인 공개적 반박 등을 통해 스스로를 구제할 힘이 있는 반면에 개인은 제도적으로 보장된 구제수단이 없으면 피해구제가 어렵다는 점에서, 인터넷 기사로 인한 피해구제 방안은 개인을 중심으로 살펴봄이 적절할 것이므로, 개인정보 영역에서의 잊혀질 권리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잊혀질 권리의 기원과 내용 등에 대해 잠시 살펴보기로 한다.

잊혀질 권리의 명시적인 기원은 2012년 EU의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제17조이다. EU는 2012년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무제한 확산되고 전파되는 현상에 대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자 잊혀질 권리를 도입하였다. 하지만 아직 EU 각 회원국에서 이를 명문화하지 않아서 실정법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았다.

잊혀질 권리의 개념은 ‘해당 정보가 처리 목적에 비추어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정보주체가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또는 동의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경우로서 해당 정보의 처리 근거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처리를 거부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해당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전파를 방지하도록 요구할 권리(GDPR, 제17조 제1항)’를 의미한다.

Article 17 Right to be forgotten and to erasure

1. The data subject shall have the right to obtain from the controller the erasure of personal data relating to them and the abstention from further dissemination of such data, especially in relation to personal data which are made available by the data subject while he or she was a child, where one of the following grounds applies:
 - (a) the data are no longer necessary in relation to the purposes for which they were collected or otherwise processed;
 - (b) the data subject withdraws consent on which the processing is based according to point (a) of Article 6(1), or when the storage period consented to has expired, and where there is no other legal ground for the processing of the data;
 - (c) the data subject objects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pursuant to Article 19;
 - (d) the processing of the data does not comply with this Regulation for other reasons.

2. Where the controller referred to in paragraph 1 has made the personal data public, it shall take all reasonable steps, including technical measures, in relation to data for the publication of which the controller is responsible, to inform third parties which are processing such data, that a data subject requests them to erase any links to, or copy or replication of that personal data. Where the controller has authorised a third party publication of personal data, the controller shall be considered responsible for that publication.
3. The controller shall carry out the erasure without delay, except to the extent that the retention of the personal data is necessary:
 - (a) for exercising the right of freedom of express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80³⁾;
 - (b) for reasons of public interest in the area of public health in accordance with Article 81;
 - (c) for historical, statistical and scientific research purpos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83;
 - (d) for compliance with a legal obligation to retain the personal data by Union or Member State law to which the controller is subject; Member State laws shall meet an objective of public interest, respect the essence of the right to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and be proportionate to the legitimate aim pursued;
 - (e) in the cases referred to in paragraph 4.

3) Article 80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freedom of expression

1. Member States shall provide for exemptions or derogations from the provisions on the general principles in Chapter II, the rights of the data subject in Chapter III, on controller and processor in Chapter IV, on the transfer of personal data to third countries and international organisations in Chapter V, the independent supervisory authorities in Chapter VI and on co-operation and consistency in Chapter VII for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carried out solely for journalistic purposes or the purpose of artistic or literary expression in order to reconcile the right to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with the rules governing freedom of expression.

2. Each Member State shall notify to the Commission those provisions of its law which it has adopted pursuant to paragraph 1 by the date specified in Article 91(2) at the latest and, without delay, any subsequent amendment law or amendment affecting them.

4. Instead of erasure, the controller shall restrict processing of personal data where:
 - (a) their accuracy is contested by the data subject, for a period enabling the controller to verify the accuracy of the data;
 - (b) the controller no longer needs the personal data for the accomplishment of its task but they have to be maintained for purposes of proof;
 - (c) the processing is unlawful and the data subject opposes their erasure and requests the restriction of their use instead;
 - (d) the data subject requests to transmit the personal data into another automated processing system in accordance with Article 18(2).
5. Personal data referred to in paragraph 4 may, with the exception of storage, only be processed for purposes of proof, or with the data subject's consent, or for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nother natural or legal person or for an objective of public interest.
6. Wher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is restricted pursuant to paragraph 4, the controller shall inform the data subject before lifting the restriction on processing.
7. The controller shall implement mechanisms to ensure that the time limits established for the erasure of personal data and/or for a periodic review of the need for the storage of the data are observed.
8. Where the erasure is carried out, the controller shall not otherwise process such personal data.
9. The Commission shall be empowered to adopt delegated acts in accordance with Article 86 for the purpose of further specifying:

- (a) the criteria and requirements for the application of paragraph 1 for specific sectors and in specific data processing situations;
- (b) the conditions for deleting links, copies or replications of personal data from publicly available communication services as referred to in paragraph 2;
- (c) the criteria and conditions for restricting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referred to in paragraph 4.

우리나라 대부분의 글은 한결같이 ‘ 명예훼손적 글’을 잊혀질 권리의 대표적인 대상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잊혀질 권리의 핵심은 불법정보인 명예훼손적 게시글의 삭제가 아니고 ‘적법한 정보’의 삭제이다.

잊혀질 권리의 대상이 되는 적법한 정보는, 예컨대 A가 스스로 올린 게시글이 순식간에 온라인에 퍼지자 놀란 A가 서둘러 삭제를 요구하는 경우, 이혼한 B가 재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B의 이혼 정보가 인터넷에 유포되어 있는 경우, 다른 사람과 결혼한 C의 옛 연인이 연관검색어로 부각되는 경우, 살인죄로 기소된 D가 나중에 무죄선고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인자로 표현된 게시글 등과 같은 것들이다.

잊혀질 권리의 필요성은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다. 첫째, 개인적 관점인데, 의도하지 않은 정보 확산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생성, 유통, 저장 등의 과정에서 정보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수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적 의미의 권리라 설명될 수 있다. 둘째, 사회적 관점인데, 한 개인의 부정적인 기록을 삭제함으로써 새로운 출발(clean state)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한 개인에게 낙인을 찍는 부정적인 기록, 파산 기록, 전과 기록, 청소년 보호처분 기록 등을 공개적인 공간에서나마 삭제함으로써 한 개인의 새로운 출발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EU의 잊혀질 권리는 몇 차례 변천을 하고 있는데, EU 의회는 2013년 11월 GDPR 원안에 대하여 수정제안을 하였는바, 일단 명칭을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에서 삭제권(right to erasure)으로 개명하였고, 몇 가지 예외사유를 추가하여 권리 범위를 제한하였다. 예컨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정보 보유가 계약 이행에 필수적인 경우·정보 보유가 법에 의무로 되어 있는 경우 등에 대하여 잊혀질 권리의 예외 사유를 추가하였다.

2014년 5월경에 있었던 유럽사법재판소의 마리오 곤잘레스 판결은 잊혀질 권리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다시 유발하였다. 이 판결은 최초로 잊혀질 권리를 인정한 판결로 소개되고 있는바, 검색엔진인 구글에 대하여 잊혀질 권리의 실행을 명령한 판결이다. (자세한 판결 내용은 후술)

이 판결 이후 EU의 작업반(Article 29 Working Party)은 잊혀질 권리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최근 11월 26일 발표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은 유럽사법재판소의 마리오 곤잘레스 판결을 설명한 것인데, 그 주요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검색 엔진은 개인정보처리자이다.
2. 개인의 프라이버시,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검색 엔진의 경제적 이익, 검색 엔진을 통하여 링크에 접근할 수 있는 대중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3. 링크 삭제로 인하여 표현의 자유·정보의 자유에 대한 영향은 극소화되어야 한다.
4. 원 소스의 게시글은 삭제되지 않아야 한다.
5. 잊혀질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원래의 웹사이트에 접촉할 의무는 없다.
6. 잊혀질 권리는 EU 회원국의 시민과 거주자의 권리이다.
7. 링크 삭제의 효과는 구글의 .com을 비롯한 관련 도메인에 발생하여야 한다.
8. 대중에게 삭제된 링크가 있음을 공개하여야 한다.
9. 링크 삭제의 기준이나 통계가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IV. 인터넷 기사에 대한 새로운 구제수단의 필요성

1. 기존 구제수단의 정리와 그 공백

인터넷 기사로 인한 피해 유형의 내용적 분류를 고려하여 기존에 이미 존재하는 구제수단을 정리한 표는 아래와 같다.

| 구분 | 고의로 허위사실 적시한 명예훼손 글 | 사실로 믿고 허위사실 적시한 명예훼손 글 | 사실 적시한 명예훼손 글 | 사후적으로 부적절하게 된 글 |
|----|---------------------|------------------------|---------------|-----------------------|
| 언론 | ① 위법한 명예훼손 기사 | ② 부적절한 기사 | ③ 적절한 기사 | ④ 부적절하게 된 기사 |
| | 정정보도청구 | 정정보도청구 | 구제 필요 없음 | 추후보도청구 |
| 정보 | ⑤ 위법한 명예훼손 정보 | | | ⑥ 부적절하게 된 정보 |
| | 게시중단 요청, 삭제청구 | | | 구제수단 없음 (잊혀질 권리 논의 중) |

언론의 법적 지위를 가진 글 중 ① 위법한 명예훼손 기사에 대하여는 현재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법원에 의한 삭제청구 등의 구제수단이 존재하고, ② 허위이지만 작성자가 사실로 믿은 명예훼손 기사는 부적절한 기사로서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가 가능하며, ④ 시간·상황의 변화에 따라 부적절하게 된 기사는 추후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

정보의 법적 지위를 가진 글의 경우, 위 III.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⑤ 위법한 명예훼손 정보는 게시중단 요청, 삭제청구, 법원에 의한 삭제청구 등의 구제수단이 존재하고, ⑥ 시간·상황의 변화에 따라 부적절하게 된 기사에 대하여는 ‘잊혀질 권리’가 고려중이나 아직 입법은 되지 않은 상황이다.

위와 같이 인터넷 기사 내지 그 파생글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이나 정보냐에 따라 서로 다른 구제수단이 존재하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수많은 공백이 존재한다. 이러한 공백은, 단기 제척기간, 정보이지만 언론에 준하여 처리되어야 할 필요성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발생한다.

예컨대, ‘정보’로 인한 피해의 구제수단에 대하여는 단기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지만 ‘언론’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수단에 대하여는 대부분 단기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따라서 단기 제척기간이 도과한 기사 등에 대하여는 현재 구제수단이 존재하지 않는바, 별도의 구제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

또한 정보의 지위를 가지지만 언론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와 유사하게 구제수단을 논하여야 하는 것들도 있다. 앞서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형식은 정보이지만 그 내용은 언론기관의 인터넷 기사 원본 즉 언론이 투영된 경우가 그러하다. 구체적으로, 3) 정정보도청구·추후보도청구 기간이 도과한 피해유발 인터넷 기사에 대한 복제글·링크, 5) 위 3) 유형에 대한 검색결과가 그러하다. 이는 앞서 말한 것처럼 구체적인 구제수단을 검토함에 있어 언론의 성격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처럼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준하여 처리할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언론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수단에서 발생하는 공백이 여기서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나아가 오히려 정보의 지위 때문에 역차별을 받아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1) 정정보도청구가 인용된 기사의 복제글 또는 링크의 경우가 그러하다. 이는 사실상 그 내용이 ⑤ 위법한 명예훼손 정보라는 점이 원본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청구의 인용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경우이므로 일반적인 인터넷 정보의 구제수단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마땅하나, 현실적으로는 언론기사에 대한 정정보도청구의 인용이 그 복제글 또는 링크의 삭제까지는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들을 반영하여 각종 구제수단의 준비 또는 필요성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 구분 | 고의로 허위사실 적시한 명예훼손 글 | 사실로 믿고 허위사실 적시한 명예훼손 글 | 사실 적시한 명예훼손 글 | 사후적으로 부적절하게 된 글 |
|---|--|--|---------------|--------------------------------------|
| | 법적 취급 | | | |
| | 현존하는 구제수단 또는 (부존재시) 구제수단 필요 여부 | | | |
| 1) 정정보도청구·추후보도청구가 인용된 기사의 복제글 또는 링크 | ① 위법한 명예훼손 정보 (원본기사에 대한 정정보도청구 인용) → ⑤ 위법한 명예훼손 정보 | ② 부적절한 정보 (원본기사에 대한 정정보도청구 인용) → ⑤ 위법한 명예훼손 정보 | ③ 적절한 정보 | ④ 부적절하게 된 정보 (원본기사에 대한 추후보도청구 인용) |
| | 원칙적으로 게시중단 요청, 삭제청구 가능. 현실적으로 거절가능성 있어 구제수단 필요 | 원칙적으로 게시중단 요청, 삭제청구 가능. 현실적으로 거절가능성 있어 구제수단 필요 | 구제수단 불요 | 구제수단 필요 |
| 2) 정정보도청구·추후보도청구 기간이 도과한 피해유발 인터넷 기사 | ① 위법한 명예훼손 기사 | ② 부적절한 기사 | ③ 적절한 기사 | ④ 부적절하게 된 기사 |
| | 구제수단 필요 | 구제수단 필요 | 구제수단 불요 | 구제수단 필요 |
| 3) 정정보도청구·추후보도청구 기간이 도과한 피해유발 인터넷 기사에 대한 복제글·링크 | ① 위법한 명예훼손 정보 | ② 부적절한 정보 | ③ 적절한 정보 | ④ 부적절하게 된 정보 |
| | 구제수단 필요 | 구제수단 필요 | 구제수단 불요 | 구제수단 필요 |
| 4) 피해유발 1인 미디어 기사 및 그에 대한 복제글·링크 | ⑤ 위법한 명예훼손 정보 | | | ⑥ 부적절하게 된 정보 |
| | 게시중단 요청, 삭제청구 | | | 구제수단 필요 (잊혀질 권리 논의 중) |

1) 정정보도청구·추후보도청구가 인용된 기사의 복제글 또는 링크

정정보도청구·추후보도청구가 인용된 기사의 복제글 또는 링크는 ‘정보’의 성격을 가지면서도 그 콘텐츠의 내용이 ‘언론’인 경우이다. 그런데 특히 원본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청구가 인용된 경우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그 내용이 ⑤ 위법한 명예훼손 정보라는 점이 확인된 경우이므로 일반적인 인터넷 정보의 구제수단인 게시중단 요청, 삭제청구 등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원본 기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정보도청구 인용의 효력이 활용되지 못하고 아예 구제 자체를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현실적으로 별도의 구제수단이 필요한 상황이며, 굳이 별도의 구제수단을 논한다면 ‘정보’의 유형 분류에 따르기 보다는 ‘언론’의 유형 분류에 따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따라서 만일 정정보도청구·추후보도청구가 인용된 기사의 복제글 또는 링크가 위법한 명예훼손 정보를 담고 있으면 위법한 명예훼손 기사에 준하여 처리하면 될 것이고, 정정보도청구·추후보도청구가 인용된 기사의 복제글 또는 링크가 부적절하게 된 정보를 담고 있으면 부적절하게 된 기사에 준하여 처리하면 될 것이다.

2) 정정보도청구·추후보도청구 기간이 도과한 피해유발 인터넷 기사

정정보도청구·추후보도청구 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허위사실이 적시되어 있거나 사후적으로 부적절하게 된 기사라면, 인터넷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터넷 정보처럼 구제수단을 도입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정정보도청구·추후보도청구 기간이 도과한 피해유발 인터넷 기사가 위법한 명예훼손 기사를 담고 있으면 위법한 명예훼손 기사에 맞추어 처리하면 될 것이고, 정정보도청구·추후보도청구 기간이 도과한 피해유발 인터넷 기사가 부적절하게 된 정보를 담고 있으면 부적절하게 된 기사에 맞추어 처리하면 될 것이다.

3) 정정보도청구·추후보도청구 기간이 도과한 피해 유발 인터넷 기사에 대한 복제글·링크

1)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하면 될 것이다.

4) 피해 유발 1인 미디어 기사 및 그에 대한 복제글·링크

1인 미디어 기사는 ‘정보’로 취급하면 될 것이다. 나아가 그에 대한 복제글·링크 역시 정보로 취급하면 된다. 따라서 기존의 ‘정보’에 대한 구제수단을 따르면 될 것이며, 굳이 별도로 새로운 구제수단을 논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 따라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관할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언론기관 소속 기자가 1인 미디어를 운영하는 경우는 언론이나 기사에 준하여 취급함이 보다 적절할 것이다.

5) 위 4가지 유형에 대한 검색결과

위 4가지 유형에 대한 검색결과는 위 4가지 유형의 결론에 맞추어 고려하면 된다. 다만 삭제 의무 등이 발생한 경우, 위 4가지 유형 글의 게시자나 언론기관이 이를 부담하는지 아니면 검색 엔진만 이를 부담하는지, 또는 함께 부담하는지 등의 절차적 문제는 발생할 수 있다.

2. 새로운 구제수단의 필요성

1), 2), 3)에 대한 새로운 구제수단을 논함에 있어, 내용적 분류에 관한 표에서 ① 위법한 명예훼손 기사나 정보, ② 부적절한 기사나 정보, ④ 부적절하게 된 기사나 정보의 3가지로 나누어 고찰하면 될 것이다. ① 위법한 명예훼손 기사나 정보는 불법정보로서 인터넷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정보이고, ② 부적절한 기사나 정보는 원시적으로 적법정보이나 허위의 정보라는 점에서 불법정보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④ 부적절하게 된 기사나 정보는 적법한 정보이나 사후적으로 피해를 유발하는 측면에서 부적절하여 조치가 필요한 정보이기 때문이다.

가. 위법한 명예훼손 기사나 정보(①)에 대한 새로운 구제수단

① 위법한 명예훼손 기사나 정보는 인터넷 공간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불법정보이다. 비록 언론기관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기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작성된 허위의 기사라면, “허위라는 것을 알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에도 진위를 알아보지 않고 게재한 허위보도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이는 언론의 자유로서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태도이다(헌재 1999. 6. 24. 97헌마265 결정). 나아가 위법한 명예훼손 기사나 정보는 심대한 인격권 침해 문제를 유발한다.

그러나 이러한 위법한 명예훼손 기사나 정보에 대한 구제수단은 부족하다. 제척기간 안에 행할 수 있는 정정보도청구를 고려할 수 있으나 짧은 제척기간은 피해자 보호에 충분치 않고 인터넷 기사에 부합하지도 않는다.

2) 정정보도청구·추후보도청구 기간이 도과한 피해유발 인터넷 기사는 단기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기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의한 구제가 불가능하고, 1) 정정보도청구·추후보도청구가 인용된 기사의 복제글 또는 링크나 3) 정정보도청구·추후보도청구 기간이 도과한 피해유발 인터넷 기사에 대한 복제글·링크는 언론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역시 언론중재위원회에 의한 구제가 불가능하다. 법원에 문의하는 사법적 구제가 있지만 이 역시 신속한 처리를 해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행정적 조치에 의한 제도 보완이 필수적이다.

1) 정정보도청구·추후보도청구가 인용된 기사의 복제글 또는 링크나 3) 정정보도청구·추후보도청구 기간이 도과한 피해유발 인터넷 기사에 대한 복제글·링크에 대하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한 구제를 고려할 수 있으나, 언론기사를 내용으로 하고 있기에 실무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관할인지 다툼이 있고, 그 내용이 언론기사인 복제글이나 링크를 과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관할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도 존재한다.

생각건대, ① 위법한 명예훼손 기사나 정보에 대한 구제는 반드시 필요하며, 그 구제는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인터넷 기사의 유효기간을 고려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때문에 언론중재위원회가 제척기간 없이 관할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인터넷 기사는 언론기관에 직접 하면 되지만, 복제글·링크에 대하여는 게시자에 대하여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면 검색 엔진이나 포털에 대하여 하는 것이 타당한지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부적절한 기사나 정보(②)에 대한 새로운 구제수단

최근 대법원은 부적절한 기사에 대한 삭제청구권을 인정한 바 있다. 즉 대법원은 “명예는 생명, 신체와 함께 매우 중대한 보호법익이고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은 물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인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는 손해배상(민법 제751조) 또는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민법 제764조)을 구할 수 있는 이외에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도 있다. 한편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기사삭제청구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기사로 인해 현재 원고의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두 가치를 비교·형량하면서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피고가 그 기사가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은 형사상 명예훼손죄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는 사유는 될지언정 기사삭제를 구하는 방해배제청구권을 저지하는 사유로는 될 수 없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고 판시하였다.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부적절한 기사는 인격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하여 삭제를 할 수 있으며, ‘상당성’의 법리에 의하여 삭제를 거부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한편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언론중재 제도에도 도입하여 피해자가 부적절한 기사에 대하여 삭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또는 ② 부적절한 기사나 정보를 허위정보로 보아 불법정보와 같이 취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언론중재 제도에서는 사후에 부적절하게 된 기사나 정보에 준하여 다루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생각건대, 첫째, 정정보도청구권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신문이 공공의 이익에 관련되는 중요한 사안에 관하여 위축되지 않고 신속히 보도함으로써 언론·출판의 자유가 지닌 본래의 기능을 훌륭히 수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진실 또한 이에 못지 않은 강한 정의(正義)의 요구이므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않아 타인의 권리를 계속해서 침해하고 있는 한, 이를 정정하지 않은 채로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정의에 반한다.”고 판시하여 그 근거를 언론기관의 진실의무로 보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태도(2006. 6. 29. 선고 2005마165등 결정)인바, 이는 대법원이 판시한 삭제청구권과는 그 법적 근거를 달리하고 있기는 하나, 정정보도청구권은 삭제청구권과 일맥상통하며, 피해자의 삭제청구권과 언론기관에 대한 삭제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진실의무를 부담하는 언론기관의 의무에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공공기관인 언론중재위원회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방해배제청구권의 근거가 되는 기본권인 인격권은 언론중재위원회가 당연히 보호해야 하는 기본권에 속하고, 셋째, 언론기관이 정정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언론중재법 제15조 제4항)에 상당성 법리가 열거되어 있지 않으며, 넷째, 인터넷 공간에서 존재하는 허위 정보는 결과론적으로 불법정보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고, 다섯째, 관련 정보가 삭제가 되지 않는 한 언론기관의 주관적인 사정에 상관없이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정신적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언론중재 제도에도 도입하고 이를 허위 불법정보에 취급하여, 피해자가 부적절한 기사에 대하여 삭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부적절하게 된 기사나 정보(④)에 대한 새로운 구제수단

처음에는 적법했으나 사후적인 상황 등의 변화로 인하여 부적절하게 된 기사나 정보는 적법정보이므로 불법정보인 위법한 명예훼손 기사나 정보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 이러한 형태의 기사나 정보가 인터넷 공간에 부존재하여야 하는 당 위성은 피해자의 고통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만일 이러한 형태의 기사나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면 마땅히 구제수단을 고려해 보는 것이 타당하다. 언론에서도 ‘잊혀질 권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부적절하게 된 기사나 정보에 대한 새로운 구제수단이 필요한지는 언론에서의 ‘잊혀질 권리’와 관련이 있고, 이는 개인정보 영역에서의 ‘잊혀질 권리’의 인정 필요성과 맥락을 같이 한다.

디지털과 인터넷 기술이 발달하기 이전, 인류는 기억에 의존하면서 또는 종이기록에 의존하면서 망각과 싸우고 과거의 사건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많은 기억을 가진 것, 많은 종이기록을 가진 것은 책임과 개선이라는 긍정적 현상을 가져 오면서 인류의 역사 발전에 기여했다.

디지털 혁명을 통하여 손쉽게 기록을 만들고 유포할 수 있는 시대, 인터넷이라는 도구와 공간을 통하여 모든 인류가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접촉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날의 인류는 이제는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너무나 많은 기록 때문에 행복해하면서 한편으로는 고민하고 있다. 인류는 더 이상 망각과 싸울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기억이라는 것만 인류의 역사에 기여한 것은 아니다. 망각 역시 인류의 역사에 크게 기여해 왔다. 상처받은 사람들은 원하지 않는 기억에 대하여는 망각하려고 노력했고, 때론 망각으로 인하여 과거의 기억을 극복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해왔다.

자연스러운 망각의 과정에서의 기억하려는 노력, 이것이 인류의 인성인 것이다. 하지만 디지털 문명을 통하여 이루어진 인터넷은 망각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냈다. 때문에 디지털 기호로 이루어진 인터넷 공간의 물성(物性)은 인성(人性)과 조화되지 못한 채 인류에게 새로운 도전을 부여하고 있다.

누구나 생성할 수 있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정보, 진보된 검색 엔진을 통하여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정보, 망각되지 않은 정보는 인류에게 크나큰 미덕이지만 이러한 미덕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고 새로운 출발을 막고 있으며, 이러한 미덕으로 인하여 누군가는 오프라인과 다른 온라인상의 정체성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

새로운 출발을 꿈꾸지만 인터넷이 발목을 잡고 있고, 과거와 다른 사람이 되었지만 인터넷에서는 여전히 일탈자로 이해되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나온 것이 바로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이다. 잊혀질 권리는 2012년 EU의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의 입법으로 혜성과 같이 등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으며 이러한 이해는 많은 오해와 근거 없는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예컨대 잊혀질 권리에 대하여 포퓰리즘의 산물, 권리의 인플레이션, 단순한 이해관계의 문제, 법체계를 무시한 정치적 구호라는 등의 비판과 비아냥거림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2012년 입법이 나오기 이전부터 유럽에서는 일부 이용자들의 구글, SNS 등에 대한 데이터 삭제 요청이 끊이지 않았고, 일부는 재판으로까지 이어졌다. 알려진 재판도 있지만 알려지지 않은 재판도 적지 않았다.

이렇게 지속적인 사법투쟁의 역사로 인하여 형성된 것이 바로 ‘잊혀질 권리’인 것이다. 즉 ‘잊혀질 권리’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번뜩 만들어진 입법산물이 아니라, 인터넷 정보 시대에서 그 잊혀지지 않는 정보 때문에 고통 받는 소수의 인류가 생존을 위하여 투쟁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되고 있는 권리인 것이다.

이들은 겉으로 봐선 거대 포털, SNS 등과 투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억만 되고 망각이 되지 않는 디지털 문명·인터넷 공간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찾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인류의 자화상일 수 있다.

이렇듯 잊혀질 권리는 지워지지 않는 디지털 기록에 맞서 자신의 인격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인바, 인터넷 기사도 인터넷 공간에서의 개인정보와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인터넷 기사는 대부분 개인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영역에서의 잊혀질 권리는 인터넷 기사에서의 잊혀질 권리로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결성의 실증적인 증거는, 그 동안 존재하였던 잊혀질 권리에 대한 사례는 대부분 언론 기사에 관한 것이라는 점이다. 우선 언론과 잊혀질 권리에 관한 외국의 대표적인 2가지 사례를 들면서 언론기사에 대하여 잊혀질 권리를 어떻게 대입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 한국 언론에서의 바람직한 잊혀질 권리의 형태에 대하여 절을 바꾸어 설명하기로 한다.

○ 이태리 정치인(Italian politician) 사건 (이탈리아, 2012년)

이 사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적절하게 된 기사에 대한 사례이다. 여기서는 언론기관에 대하여 삭제를 판결할 것이 아니라 정보갱신을 판결한 것이 특이하고, 검색 엔진에 대하여는 삭제를 기각한 것이다.

1993년경, 이탈리아 북부 롬바르디 지방 출신의 한 정치인(이하 ‘남자’)이 부패 혐의로 체포되었다가 곧 무죄 방면됐다. 하지만 그의 체포 뉴스는 이탈리아 언론인 ‘Corriere della Sera’의 뉴스 아카이브(news archive) 때문에 검색결과에 여전히 나타나고 있었다.

이에 위 남자는 이탈리아 데이터보호위원회(Data Protection Commissioner)에 위 문제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밀라노 법원에 ‘Corriere della Sera’는 자신에 관한 기록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무죄방면이 되었으니 ‘Corriere della Sera’에 아직 업데이트 하지 않은 자신에 관한 뉴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만일 이러한 조치가 어려우면 체포 뉴스에 자신의 무죄 방면 뉴스를 링크해 주거나 검색결과로 나타나지 않도록 요청했다. 하지만 이러한 청구도 기각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태도를 취했다. ‘Corriere della Sera’는 아카이브 되어 있는 예전의 체포 뉴스에 업데이트된 뉴스가 같이 링크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판시했고 이렇게 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라는 공익과 프라이버시·잊혀질 권리라는 사익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며, 한 개인의 정체성(identity)에 관한 권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국민이 정확하고 무결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다만 검색엔진은 단순한 매개자일 뿐이므로 위 남자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 마리오 곤잘레스 판결 (2014년 5월, EU)

이 사건 역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적절하게 된 기사에 대한 사례이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언론기관에 대하여는 삭제를 기각하였지만, 검색 엔진에 대하여는 링크의 삭제를 인용하였다.

이 사건의 발단은 마리오 코스테하 곤잘레스라는 스페인 사람이 과거 자신의 집이 경매에 넘어갔던 적이 있지만 수년전에 이미 빚을 갚고 집을 찾아왔는데도, 집이 경매에 넘어간 사실을 보도한 언론기사가 지금까지도 구글에서 검색됨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해당 언론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를 상대로는 기사 자체의 삭제를, 구글 스페인과 구글 본사를 상대로는 검색결과에 나타나는 링크의 삭제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대해 올해 5월 13일 유럽사법재판소(ECJ)에서 최초로 잊혀질 권리를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됐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언론사에 대한 잊혀질 권리 행사는 받아들일 수 없고 구글에 대한 잊혀질 권리 행사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 바로 이번 판결이다.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의 쟁점은 크게 5가지였다. 첫째, 구글을 개인정보처리자로 볼 수 있는가? 둘째, 미국 기업인 구글에게 유럽연합의 지침을 적용할 수 있는가? 셋째, 검색엔진 운영자에게 링크삭제 의무가 있는가? 넷째, 정보 자체의 게재를 막을 수 있는가? 다섯째, 언제나 링크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가? 이 중에서 본 연구와 관련이 있는 것은 넷째, 다섯째이다.

유럽사법재판소는 “검색엔진의 운영자는 제3자에 의해 게재되고 특정 개인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한 웹사이트의 링크들”을, “그 개인의 이름에 기초하여 행해진 검색으로 표시된 결과목록에서 삭제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리고 이러한

삭제 의무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특히 “현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한 삭제요구가 정당한지 여부를 심사해야 하고 그 외에 그러한 검색결과 목록이 그 정보주체에 대해 편견을 불러일으키는지 여부까지 살필 필요는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그 웹사이트의 정보 게재 자체는 합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정보 게재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단이었다. 곤잘레스가 자신의 기사 자체를 삭제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기사 자체의 삭제를 용인할 경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될 수 있고 명예훼손 등이 성립하지 않는 한 표현 자체를 막을 뚜렷한 법적 근거도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잊혀질 권리의 한계 내지는 적용범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보주체의 이러한 잊혀질 권리는 원칙적으로는 검색엔진 운영자의 경제적 이익은 물론이고 그 정보에 접근하고자 하는 일반공중의 이익에도 우선하는 것이지만, ① 공적인 영역에서 그 정보주체가 수행한 역할에 대한 정보인 경우 ② 그 검색결과 목록을 통해 당해 정보에 접근하는 일반 공중의 이익이 정보주체의 이익보다 압도적인 경우 등의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이런 경우에는 잊혀질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공익과 사익의 이익형량, 공적 영역 기록과 사적 영역 기록의 구별 등을 통해 잊혀질 권리의 적용범위 내지는 한계를 설정하여야 한다는 판시다.

3. 잊혀질 권리에서 정보갱신권으로

| | 이탈리아 정치인 판결 | 마리오 곤잘레스 판결 |
|-------|-------------|---------------|
| 관할 | 이탈리아 대법원 | 스페인 → 유럽사법재판소 |
| 사안 | 체포 이후 무죄 방면 | 파산 이후 정상화 |
| 언론기관 | 갱신 의무 | 의무 없음 |
| 검색엔진 | 의무 없음 | 링크 삭제 의무 |
| 권리 형태 | 갱신청구권 | 잊혀질 권리 |

최근 유럽사법재판소(ECJ)의 마리오 곤잘레스 변호사 판결 이후 국내외적으로 잊혀질 권리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 보다 뜨겁다. 변화하는 IT 현상에서 개인의 자기정보에 대한 결정권을 강화했다는 차원에서 이 판결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본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권리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유럽사법재판소의 고민보다 더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하겠고 더 많은 법적·기술적 검토와 여론 수렴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IT 환경은 유럽과 다르며,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환경 역시 유럽과 상이하다. 마리오 곤잘레스 판결에서 볼 수 있는 유럽과 구글의 관계는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

예컨대 유럽의 개인정보 당국은 견제의 대상으로 구글을 대했지만,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당국은 우리나라 포털인 네이버나 다음 등을 오직 견제의 관점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유럽 사법재판소나 GDPR의 잊혀질 권리를 우리나라에 도입함에 있어 그 이념과 아이디어는 반영하되 그대로 카피해서는 아니 되고 우리 실정에

맞추어 적응시켜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형 잊혀질 권리로서 ‘정보갱신권’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이미 언급한 이탈리아 정치인 판결은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대부분의 잊혀질 권리에 관한 판례는 단지 삭제 여부만을 판단하여 당부를 결정하였지만, 위 이탈리아 대법원 판결은 단순한 삭제가 아닌 업데이트 의무를 부과하면서 표현의 자유·언론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조화시키고 있다.

잊혀질 권리라고 하면 오직 정보를 삭제할 권리로 이해되고 있고 또 사실 그것이 정확한 이해이지만, 극단적인 정보의 삭제(erasure)가 아닌 완화된 형태의 정보 업데이트(update)를 기본적인 방법으로 받아들여 현 시점에서 정확한 정보의 제공을 하게 하는 권리로 보는 것도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본다.

즉 잊혀질 권리는 과거에 정확했고 적법했던 정보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부적절해졌을 때, 삭제의 방법으로 디지털 시대의 망각을 실현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현 시점에서의 정확성을 도모해 보자는 것인데, 단순한 삭제 대신 업데이트를 원칙으로 삼게 되면 망각의 지점은 거치지 못하더라도 그 궁극적 목적인 현 시점에서의 정확성 도모는 놓치지 않을 것이며, 특히 잊혀질 권리의 가장 큰 비판점인 표현의 자유 침해나 알권리 침해의 문제점이 완전히 해소될 것이기 때문이다.

삭제를 하지 않고 정확한 정보의 변천과정을 밝혀 이를 누구나 볼 수 있다면 표현의 자유나 알권리 침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 기록으로서 인터넷의 기능을 그대로 살릴 수 있을 것이고 인터넷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특히 언론의 경우에는 더더욱 부적절하거나 부적절하게 된 기사 등에 대하여 극단적인 삭제를 하는 대신에 완화된 업데이트를 하는 것이 언론의 자유 보호 차원에서 바람직할 것이다.

나아가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의 용어는 그 자체로서 법적 권리 용어로 부적합해 보인다. 무엇이든지 다 삭제할 수 있다는 인식을 주고 있다는 점에

서 극단성을 띠고 있으며, 그 본질이 이익형량이라는 객관적인 권리의 성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보갱신권’이란 용어를 쓰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갱신’은 ‘업데이트(update)’의 의미이다. 잊혀질 권리를 단순 삭제가 아닌 업데이트가 원칙인 권리로 이해함으로써 잊혀질 권리의 가장 큰 비판을 극복할 수 있다면, 용어 자체도 잊혀질 권리 대신에 ‘정보갱신권’을 쓰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이 때 업데이트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대표적으로 링크 삽입이 있겠고, 내용 삽입 방법 등도 고려할 수 있다. 광의의 의미로는 삭제도 업데이트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유럽의 잊혀질 권리를 그대로 받아들임에 있어 가장 큰 비판점은 표현의 자유나 알 권리 침해의 가능성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비판받는 점이 바로 기존의 명예훼손정보 삭제청구나 정정보도청구 등의 권리와 관계 정립이다.

어떤 경우에 잊혀질 권리를 사용하고, 어떤 경우에 명예훼손 삭제청구를 사용하며, 어떤 경우에 정정보도청구를 해야 하는지 그 경계가 불명확하여 기존 법체계 안에 짜 맞추어 넣기가 쉽지 않은 것이 유럽의 잊혀질 권리이다.

하지만 잊혀질 권리를 정보갱신권으로 이해하면, 이러한 경계는 명확하게 정립된다. 예컨대 사실과 다른 기사는 정정보도청구로서 해결하고, 사실에 부합하지만 상황이 바뀐 기사는 정보갱신권으로 해결하면 된다. 위법한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게시글은 명예훼손 삭제청구로서 해결하고, 적법한 게시글은 정보갱신권으로 해결하면 된다.

즉 잊혀질 권리를 유럽의 잊혀질 권리가 아닌 정보갱신권으로 이해하게 되면, 기존의 우리 법체계에 안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의 법질서를 침범하지 않고 기본적

인 법질서의 변형을 가져오지 않으면서도 순조롭게 우리 법질서에 포섭시킬 수 있다.

한국형 잊혀질 권리인 ‘정보갱신권’은 오직 업데이트 의무만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삭제함이 타당한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삭제의 방법을 쓸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권리이다.

예컨대 청소년이 무심코 올린 글이나 청소년에 관한 글, 공익과는 전혀 무관하고 매우 사적인 내용의 글 등은 업데이트보다는 삭제의 방법이 더 적절할 수 있다. 즉 정보갱신권은 원칙적으로 업데이트 의무를 부과하되, 위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는 청소년 보호 차원이나 사적 영역 보호 등의 이유에서 삭제 의무를 인정하는 권리이다.

이처럼 잊혀질 권리의 도입은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 폐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즉 도입의 당위성은 충분하지만 그 입법이나 권리범위, 실행방법 등은 신중해야 한다.

신중의 이유는 잊혀질 권리의 단점인 표현의 자유·알권리 침해 우려, 기록의 인터넷 기능 소멸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특히 언론 기사를 사후적으로 부적절해졌다는 이유로 마구 삭제한다면 언론으로서 기능도 하지 못할 수도 있고, 국민의 알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할 수 있다.

개인정보 영역에서의 잊혀질 권리는 한국에서 받아들일 때는 ‘정보갱신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처럼, 언론 영역에서의 잊혀질 권리는 더더욱 ‘정보갱신권’으로 개선하여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V. 새로운 구제수단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1. 위법한 명예훼손 기사나 정보·부적절한 기사나 정보의 삭제청구

가. 구제 내용

위법한 명예훼손 글이나 부적절한 허위의 글은 기사의 형태이든지 아니면 복제글·링크의 정보 형태이든지 상관없이 인터넷 공간에 존재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피해자는 위법한 명예훼손 글이나 부적절한 허위의 글이 존재하는 한 언제든지 그 글의 삭제를 청구할 수 있다. 삭제의 범위는 일부 또는 전부일 수 있다.

나. 관할

인터넷 공간에 존재하는 위법한 명예훼손 글이나 허위의 글은 그 형태가 기사이든지 아니면 복제글·링크의 정보 형태이든지 상관없이 글의 실질적 내용은 기사이므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보다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이를 관할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해자는 위법한 명예훼손 글이 존재하는 한 언제든지 언론중재위원회에 그 글의 삭제를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

다. 피청구인

인터넷 공간에서의 위법한 명예훼손 글이나 부적절한 허위의 글은 신속하게 삭제되어야 하고 그 글의 삭제에 인터넷 공간을 운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현재 그 글을 보유·관리·이용하고 있는 자라면 언제든지 피청구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는 언론기관, 검색엔진, 포털 등 상관없이 위법한 명예훼손 글이나 허위의 글을 보유·관리·이용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그 글의 삭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정보통신망법에 의하면 위법한 명예훼손 정보에 대하여 검색엔진, 포털 등이 직접 임의적인 임시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3), 비록 위법한 명예훼손 글이나 허위의 글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형식이 언론기사라는 점을 고려하여 반드시 피해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만 삭제를 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 부적절하게 된 기사나 정보의 갱신청구

가. 구제 내용

부적절하게 된 기사나 정보는 원시적으로는 적법한 글이므로 삭제청구보다는 갱신청구를 인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갱신이라는 것은 업데이트 내용이나 링크를 원 기사에 삽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갱신청구 인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기사에 대한 공중·언론기관의 이익과 피해자의 이익을 이익형량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갱신청구의 근본이 ‘잊혀질 권리’이고, 잊혀질 권리의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언론기관의 이익과 피해자의 이익의 2가지만을 판단하지 않고, 기사에 대한 공중의 이익까지 같이 고려하여 판단하였다는 점에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나. 관할

갱신시 삽입되는 업데이트 내용이나 링크는 관할 기관에서 정해주어야 하는데, 이 역시 언론기사에 관한 것이기에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담당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한편 언론기사에 개인정보가 담긴 경우, 개인정보를 담당하는 주무기관이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이 갱신을 요구할 수 있어 언론중재위원회와의 중복관할 문

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잊혀질 권리의 도입을 시도하는 정보통신망법에 언론기사에 대한 잊혀질 권리의 관할에 대하여 언급해 주는 것이 좋겠고, 이를 위한 언론중재위원회나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상 협의가 전제되어야 하겠다.

다. 피청구인

위법한 명예훼손 글과 달리 최초 게재 당시에는 적법한 글이었으므로, 검색엔진이나 포털에 대한 청구보다는 게재에 책임이 있는 언론기관이나 게시자를 상대로 갱신청구를 하게끔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다만 원활한 갱신청구 절차의 운영을 위해서, 게시글을 관리하는 포털은 게시자의 정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문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삭제청구·갱신청구와 기존의 정정보도청구·추후보도청구의 관계

정정보도청구나 추후보도청구가 인용되면 서로 다른 시점의 2개의 기사가 존재하는 반면, 삭제청구의 인용시에는 인터넷 기사의 부존재, 갱신청구의 인용시에는 1개의 인터넷 기사의 존재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하지만 실질적인 의미를 따지면 정정보도청구는 삭제청구와 맥을 같이하고, 추후보도청구는 갱신청구와 맥을 같이 한다.

새로운 구체수단인 삭제청구와 갱신청구를 전통적인 정정보도청구와 추후보도청구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오프라인·방송 기사와 인터넷 기사를 나누어 전자에 대하여는 짧은 제척기간의 정정보도청구와 추후보도청구 제도를 운용하고, 후자에 대하여는 제척기간이 없는 삭제청구와 갱신청

구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즉 현재 인터넷 기사에 대하여 짧은 제척기간을 가진 정정보도청구나 추후보도청구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정정보도청구나 추후보도청구 제도에서는 인터넷 기사를 완전히 제외하고, 인터넷 기사는 오로지 삭제청구와 갱신청구만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4. 인터넷 기사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인터넷 기사에 대한 반론보도청구가 문제되는데, 인터넷 기사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역시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반론보도가 인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제글·링크에 반론보도의 내용이 포함이 되지 않은 경우 인터넷 기사에 대한 ‘갱신청구’ 절차를 준용하여 운용하면 될 것이다.

VI. 신 뉴스미디어 기사에 대한 구제수단

1. 신 뉴스미디어 기사의 법적 취급

최근 다음카카오사는 카카오토픽(Kakao Topic)이라는 모바일앱 뉴스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뉴스펀딩(News Funding)이라는 뉴스 플랫폼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카카오토픽의 경우 다음카카오사는 부가통신사업자이고 카카오토픽은 언론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모바일 앱으로 뉴스를 서비스하는 것 외에는 실질적으로 그 운영 내용이 네이버 뉴스스탠드와 크게 다르지 않아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의 ‘인터넷 뉴스서비스사업자’로 분류할 수 있다.

한편 뉴스펀딩 서비스는 다음카카오사가 언론기관 기자, 일반인 등과 기사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들이 기자, 일반인 등을 선택하여 기사 작성을 의뢰하면서 기사 작성비를 임의로 지급하면, 다음카카오사와 기사제공 계약을 체결한 기자, 일반인 등이 기사 작성비로 기사를 작성하여 뉴스펀딩 플랫폼에 올리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 서비스는 카카오토픽보다는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지만, 기사 작성자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즉 언론기관에 속하는 기자가 기사를 작성하여 올리면 ‘인터넷신문’으로 보아야 하고, 일반인이 기사를 작성하여 올리면 이는 뉴스펀딩이 카페 서비스와 다를 바 없어 ‘1인 미디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신 뉴스미디어 기사에 대한 규제수단

카카오토픽은 신문법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분류할 수 있기 때문에 언론중재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이 경우 언론중재법에 의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고, 지금까지 논의한 인터넷 기사에 대한 새로운 규제수단이 여기에도 적용된다.

반면 뉴스펀딩의 경우, 언론기관에 속한 기자가 기사를 작성하여 기사를 뉴스펀딩에 올리면 이는 인터넷신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언론중재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이 경우 언론중재법에 의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고, 지금까지 논의한 인터넷 기사에 대한 새로운 규제수단이 여기에도 적용된다.

반면 일반인이 기사를 작성하여 기사를 뉴스펀딩에 올리면 이는 1인 미디어이므로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정보통신망법에 의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VII. 결 어

기존에 존재하던 정정보도청구나 추후보도청구의 구제수단은 오프라인·방송 기사에 적합하나 상시 존재하면서 언제든지 검색되어지는 인터넷 기사에는 부적합한 면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터넷 기사에 대한 정보법적 접근을 시도해 보았다.

인터넷 기사는 언론적 성격도 있지만 인터넷 공간에서는 정보법의 시각으로도 파악해야 한다. 예컨대 위법한 명예훼손 기사나 정보, 부적절한 기사나 정보는 본질적으로 허위정보이므로 인터넷 공간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바 이들에 대한 삭제청구를 인정해야 하고, 처음에는 적절했으나 사후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부적절하게 된 기사나 정보는 ‘잊혀질 권리’의 법리를 변형한 ‘갱신청구권’을 근거로 하여 업데이트 게시글 또는 링크를 첨부하는 것이 인터넷 기사에 대한 새로운 구제수단으로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인용문헌]

1. 김경환, [정보보호법바로알기 24] 잊혀질 권리: 인성과 물성의 충돌, 보안뉴스, 2013. 1.
2. 김경환, [정보보호법바로알기 26] 잊혀질 권리 : 전 세계는 소송중!, 보안뉴스, 2013. 2.
3. 김경환, [정보보호법바로알기 30] 잊혀질 권리 : 몇 가지 오해, 보안뉴스, 2013. 3.
4. 최주선, [정보·기술보호법 바로알기 59] ECJ, 최초 ‘잊혀질 권리’ 판결...5대 쟁점은?, 보안뉴스, 2014. 5.
5. 김경환, [정보·기술보호법 바로알기 63] ‘잊혀질 권리’에서 ‘정보갱신권’으로, 보안뉴스, 2014. 9.

토론내용

사회자

양 승 목 (언론중재위원,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패널토론자

박 정 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심 석 태 (SBS 뉴미디어부장)

이 준 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수석부회장)

정 혜 승 (다음카카오 정책파트장)

2014년도 언론중재위원회 정책심포지엄 토론내용

○ 박정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오늘 발제자께서 좋은 발제를 해주셔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의 발제를 바탕으로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몇 년 동안 중재위원으로 일하며 얻은 실무적 관점을 토대로 질문을 드려 볼까합니다.

우리나라의 언론조정중재제도는 1981년 독일의 반론보도청구권을 근간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잘못된 언론보도에 대한 신속한 자기방어권을 강조하는 반론보도청구권의 특성상 ‘제척기간’을 상당히 단기간으로 제한하였습니다. 그 이후 정정보도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 제도가 도입되면서 반론보도청구권에 대한 제척기간이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그 결과 ‘조정중재 신청기간’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에 비교하여 단기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기사는 종이신문이나 방송과 달리 삭제가 되지 않는 한 인터넷 상에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검색될 수 있어 그 피해가 지속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언론중재법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기사에 대한 구별 없이 단기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제척기간으로는 잘못된 인터넷 기사에 대하여 그 구제를 충분히 할 수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인터넷 상에 기사가 존재하는 한 피해자가 그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조정중재 등 구제수단을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 발제자께서는 인터넷 기사의 경우에는 정정보도청구나 추후보도청구를 제외하고 오로지 ‘삭제청구와 갱신청구’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인터넷 기사의 경우에도 삭제청구보다는 기존의 정정보도청구나 추후보도청구가 오히려 피해구제에 적합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조정 사례에 비추어 보면 기사 전문의 정정 또는 삭제를 청구하거나

그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 조정 절차가 이루어지기보다는 기사의 일부, 경우에 따라서는 극히 제한적 부분의 기사내용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로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당초 기사가 무엇이고 이에 대하여 어떤 정정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과정을 함께 알리고 싶어 하는 피해자 역시 적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정정보도나 추후보도를 원하는 피해자가 있음에도 삭제청구와 갱신청구만을 가능하게 한다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구제를 받지 못했다고 느끼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삭제청구와 갱신청구만을 활용할 수 있게 하기보다는 정정보도청구 등 기존의 제도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 하면서 삭제청구와 갱신청구를 추가하는 것이 피해구제에 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최근에 자신의 명예와 권리를 찾으려는 의식이 강해지는 경향에 발맞추어 정정보도 등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안마다 각양각색의 원인과 경위가 있어 일률적으로 그 배상액을 정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언론중재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서는 공통분모를 토대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을 연구하고 이를 체계화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기사는 오프라인 기사와 달리 인터넷 사용자가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어 그 생명력이 매우 강합니다. 때문에 잘못된 기사로 인한 피해 역시 예상 외로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잘못된 해당 기사가 오프라인으로만 존재하는 경우와 온라인으로도 존재하고 있는 경우를 구별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손해배상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양자를 동일선상에서 평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링크 또는 복제글의 존재 여부 및 그 유포의 정도 역시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하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벽한 구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 차선으로라도 손해배상이 남겨질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지속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정중재 과정에서 합의 등을 통해 인터넷 기사가 정정이나 삭제가 되었으나 조정 전에 이미 기사가 블로그나 카페 등 인터넷 공간에 전파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위원으로 일하면서 언론사와

피해자 간 합의가 모두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피해자가 ‘블로그나 카페 등에 오른 기사의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라고 질문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 경우 블로그나 카페 등에 기사를 전과한 행위자가 언론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언론중재위원회가 조정이나 중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발제자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는 기사가 아닌 일반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비록 조정 과정을 통해 어느 정도 피해를 회복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조정 절차를 통해서 중국적인 피해를 해결할 수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실무상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물론 현행 법령에서도 이와 같은 경우에 대한 피해구제 제도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빠르고 쉽게, 절차를 중복하지 않으면서 중국적인 피해를 해결해 주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때문에 현행 제도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현행 법제 하에서 정부 당국이나 언론중재위원회, 언론, 포털 등 각 관계자들이 어떤 노력을 하여야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보다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환 (발제자,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

먼저 정정보도청구와 추후보도청구가 피해구제에 더 적합한 경우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삭제청구 안에 정정보도청구가 포함되어 있고, 추후보도청구는 갱신청구와 맥락이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삭제영역에 대해 어떠한 과정을 반드시 공지해야겠다고 하면 스스로 삭제청구권 대신 갱신청구권의 형태로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삭제청구는 굉장히 강력한 조치이고 갱신청구는 상대적으로 약한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질문해주신 현행 법제에서 정부당국이나 언론중재위원회 각 관계기관과 언론, 포털 등이 어떤 노력을 해야 피해구제가 가능할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원의 손해배상액수를 높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의 명예훼손 손해배상액수는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손해배상액이 높아진다면 사법적 판결이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고 예방하는 데에

더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터넷 기사를 관리하는 기구들인 언론중재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저작권위원회 등이 협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로서는 불법 저작물이 있다면 저작권위원회가 차단을 하지 못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협조 요청을 거쳐 불법 인터넷 저작물을 차단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유관기관들이 협조를 강화한다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정정보도청구나 추후보도청구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협조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저작권위원회 등이 지속적으로 협조 회의를 진행하여 인터넷 공간의 피해구제에 공백이 없도록 노력한다면 현행 법제 안에서도 피해구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심석태 (SBS 뉴미디어부장)

제가 처음 기자가 된 1991년과 지금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인터넷과 강력한 검색엔진이 등장했다는 점일 것입니다. 이로 인해 언론의 자유가 확대되어 시설이나 자본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도 인터넷을 이용해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고, 시간적·공간적 경계가 무너져 글이 오래 유지되고 널리 전달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언론환경의 변화에 걸맞게 제도와 관행을 고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현업 기자로 언론법을 연구하고 강의하고 있는데, 한국의 언론법은 매우 복잡한 형태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전업 기자들도 언론법의 세세한 내용을 모두 인지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오늘과 같은 법적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입법이 이루어진다면 복잡한 우리 언론법제에 또 새로운 규제의 둘을 엮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발제를 들으니까 안심이 되고 우리가 더 성숙된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논의 과정에서 언론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는 것은 언론의 궁극적인 사명입니다. 사실과 다른 정보가 유통되게 놓아두는 것 자체가 언론의 사명에 어긋나는 행위

인 것입니다. 따라서 언론의 자유라는 미명 하에 잘못된 기사를 수정하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인권적 감수성, 언론윤리에 대한 인식이 언론의 자유에 대한 감수성, 인식과 함께 가야 올바른 제도가 구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부적절한 기사라는 표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제문을 살펴보면 상당성을 인정받아 면책이 된 기사의 경우나 상황의 변화에 따라 오보가 되어버린 기사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내지 ‘부적절하게 된’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분류상 불가피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처음에 사실에 근거해 공적인 정보를 전달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기사였는데 추후에 허위의 사실로 변화한 기사를 ‘부적절하다’고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아 보입니다. 때문에 이를 다른 표현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시대의 역사와 시대상을 반영한 것이 곧 기사이기 때문에 기사가 부적절하다는 식으로 비난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인권의 보호의무나 언론의 진실의무에 비추어 이에 합당하게 기사를 표현하는 방식을 찾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발제자께서는 책임을 묻는 것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상당성’에 관한 판결을 소개하셨는데, 이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물론 잘못된 사실이 계속 보도되고 유통되도록 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일 것입니다. 모든 기사가 문책을 받고 손해배상을 할 필요는 없지만 정보에 관한 부분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수정하는 것이 사회 정의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사실이 전파되는 것에 대해서는 언론도 일정 정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링크나 검색결과 등의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기사를 삭제하는 것은 옳은 해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탐구하는 방식을 살펴봐도 기사를 삭제하는 것이 얼마나 부적절한 행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인류는 고대의 유적을 발굴하여 그 시대상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만약 그 시대에 대한 기록이나 유물이 어떠한 이유로든 삭제된다면 인류의 역사는 남아나지 않을 것입니다. 정보를 무작정 삭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갱신의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사를 내보낸 이후에 심각한 오류가 있을 경우 언론사 스스로 전문을 취소하거나 표

현을 업데이트합니다. 그러나 만약 오류가 있는 정보를 정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시대상의 일부이고 역사적 기록이라고 하면 1보, 2보, 3보의 형태로 남겨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항상 그 기사가 완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더 지나고 새로운 정보들이 계속 추가되다 보면 더 완벽한 기사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지금은 삭제되어야 할 잘못된 정보로 인지되는 것도 먼 훗날에는 진실이 될 수도 있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기사는 완벽하지 않은 잠정적 진실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다음으로 입증책임과 제척기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갱신이나 수정의 필요성을 인정할 때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의 입증을 요구할 것인가를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에는 당사자의 주장만으로도 기사의 유통을 중지시키거나 기사에 대한 잠정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갱신이나 수정을 청구했을 때 피해자와 언론사 양측에게 어느 정도의 입증을 요구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취재를 하고 보도를 한 언론사의 입장에서 시간이 많이 지난 기사에 대한 입증수단을 마련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척기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당 시간이 지난 후 자신이 쓴 기사에 대해 기억조차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잘못됐다고 주장하면 해당 언론에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내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링크를 삭제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링크는 이제 인터넷 서비스에 중요한 정보로 자리 잡았습니다. 검색엔진이 제공하는 링크를 제외하면 사실상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점도 삭제청구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환 (발제자,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

부적절한 기사라는 용어에 대한 지적에 대해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발제에서 ‘부적절하다’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잊혀질 권리 판결에서 정보를 원하지 않는 정보와 부적절한 정보로 구분해 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원하지 않는 정보는 주관적 요소가 들어간 것이고 부적절하다는 것은 객관적인 요소를 고려하겠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잊혀질 권리가 논의선상에 등장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정보의 삭제로 이해를 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원하지 않는 정보의 삭제가 아니라 부적절한 정보의 삭제라는 의미를 담고자 ‘부적절하다’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고민을 조금은 더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법적인 용어로 삭제청구권을 정리를 할 때는 다른 용어로 사용되는 것이 합당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에 대한 입법과정이 진행된다면 이 표현을 달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고 수십 년이 지나서 진실이 밝혀지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발제에서는 당시에는 진실인줄 알았으나 후에 허위로 밝혀진 기사에는 삭제청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법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런 경우에는 언론의 역사성이나 입증책임, 제척기간과 같은 부분을 고려할 때 갱신청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조금 더 옳은 방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이준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수석부회장)

우선 인터넷 기사에 관한 피해구제를 주제로 해서 토론을 개최해주신 언론중재위원회에 감사드립니다. 구체적인 수치나 통계를 들지 않더라도 인터넷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인터넷 기사를 보는 사람의 수가 신문 기사를 보는 사람의 수를 넘어선지도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인터넷 기사를 둘러싼 보도와 피해구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보도에 관한 사후 구제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제에서 약간 벗어난 감이 있지만 사례 두 가지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구체적 기사를 제시하기 보다는 제가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판교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에 대한 수많은 보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주목한 보도는 당시 행사의 사회자가 이미 환풍구와 관련한 경고를 했다는 내용의 보도였습니다. 보도가 나간 이후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

이용자들이 사자(死者)에 대한 외람된 표현을 사용하며 사자(死者)의 안전불감증 부분에 대해 질타를 했습니다. 사회자가 이미 경고를 했다는 내용은 많은 인터넷 신문을 통해 전파되었습니다. 이 보도에 대해 언론이 사회자를 직접 확인했는지, 최초 보도자는 누구인지를 찾아봤습니다. 사회자가 경고를 했다는 내용의 최초 보도는 KBS에서 이루어졌었습니다. 당시 KBS는 사회자를 익명처리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가 있는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한겨레는 KBS의 보도에 대한 반론보도를 냈습니다. 한겨레는 사회자와 직접 인터뷰한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탈출하신 분만을 인터뷰하여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자를 직접 인터뷰해보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한겨레의 보도는 거짓보도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회자 스스로가 환풍구 관련 안전조치 발언을 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사회자는 한겨레의 보도가 자신을 사회적으로 죽인 보도였다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사회자가 이에 대한 반론보도를 요청했으나 한겨레는 사과하는 정도에서 사안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와 유사한 보도를 했던 타 매체는 당사자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한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예시 하나를 들어보겠습니다. 디스패치와 동아닷컴 등의 미디어에서 보도된 연예인 노홍철 씨와 관련된 기사입니다. 그런데 이들 보도 중 노홍철 씨가 직접 코멘트를 한 기사는 전혀 없었습니다. 다음날이 되어서야 노홍철 씨가 직접 자신의 의사를 표명한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언론이 이슈가 터지면 검색어 장사를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모든 언론이 계속해서 받아쓰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다보면 최초 보도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알기 어려워지고, 기자는 자신이 작성한 기사가 진실인지 거짓인지 모르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에서 저는 기자의 책임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기자 스스로가 객관적인 사실과 그에 부합하는 근거를 가지고 보도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자 스스로가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기사를 쓸 때에만 사후 처리를 위한 사회적 비용과 불이익을 당하는 선의의 피해자들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발제내용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 피해자가 되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 크게 공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가 언론이 아닌 포털이나 게시판에 게재될 때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생각해보니 고민이 생기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언론매체의 보도가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제도적인 대처방안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포털이나 커뮤니티, 1인 미디어, 블로그 등의 기사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해야 할지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기사이기 때문에 언론법에 근거해 피해구제 방안을 찾아야 할지, 아니면 정보법 차원에서 부적절하거나 허위인 정보로 파악해 삭제를 요청해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제자께서 언론영역을 생산자 중심으로 하여 ‘언론’과 ‘정보’로 구분해 놓으신 것은 기계적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하나의 중요한 틀을 제공해주신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도 언론의 기사를 정보법 차원의 단순 정보로 바라보는 것은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와 상충되는 부분이 존재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권리 간의 충돌에 어떻게 접근할지 다소간의 의문이 생깁니다.

또 저는 2005년 인터넷신문 법제화 과정 당시 현업에서 공청회 등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를 기준으로 9년이 지난 지금 인터넷신문에 대한 구성요건이 과거의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시에는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가 일주일 단위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기사를 만들어내는 것이 인터넷신문의 등록요건이었습니다. 즉, 오늘날 대두하고 있는 1인 미디어, 블로그는 신문법에서 제외되어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요즘과 같은 인터넷 언론환경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구성요건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인터넷신문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면 표현의 자유를 억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만 현재 인터넷 공간은 9년 전과 너무나도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이 달라진 현실에서 인터넷신문의 등록요건을 바꾸어 갈 것인가는 우리들 모두에게 숙제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발제자께서는 잊혀질 권리나 정보갱신권의 개념을 제시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모든 인터넷 게시물에 즉각적으로 잊혀질 권리를 적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포털이나 언론사의 경우 그 사회적 파급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일반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이룬 후에 단계적으로 적용시켜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시해주신 피해구제 방안에 대해서도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후적으로 구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신문법은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들은 상당히 부실한 것 같습니다. 최초의 신문법에서 포털은 인터넷 매체가 아니었습니다. 개정 당시에도 포털이 발전하고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신문법 안으로 포함시킬 것인가 뉴미디어법을 제정할 것인가가 쟁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포털 전체에 신문법을 적용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여겨졌습니다. 적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결국 포털의 뉴스매개 부분만 신문법 안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 포털의 뉴스매개 부분에 대한 의무조항도 매우 낮게 설정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인 언론에 적용되는 것과 달리 포털은 단지 편집책임자와 편집기준을 바이라인 형식으로 명시하는 수준의 의무만을 지니고 있습니다. 때문에 포털의 의무조항을 강화할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의 발제는 인터넷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게시물을 정보법 차원으로 바라보는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인터넷 언론에 대한 새로운 논의의 기준을 던져줄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이에 대해 상당 부분 찬성하는 바입니다. 오늘 새로이 제시된 정보갱신권에 대해서도 법조계와 정부, 포털, 그리고 언론이 지속적으로 모여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삭제청구나 갱신청구의 적용 방향을 찾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심석태 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에도 복잡한 언론법 영역이 더 복잡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포털이나 인터넷 미디어,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가 등장함에 따라 나타난 기존 언론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법률적 방안을 구성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환 (발제자,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

정보법을 인터넷 기사에 적용하는 법리적 해석은 기존에 잘 하지 않던 접근방법입니다. 그러나 저는 인터넷 기사도 분명 정보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특수한 유형의 정보라는 차이만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인터넷 기사를 정보법 영역에서도 충분히 다룰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기사를 정보법 영역에서 다루어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언론의 자유라는 기본권적 측면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있는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정보법 분야에서 다루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기존에 언론법 영역에서 중요한 가치로 여겨졌던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가 정보법 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고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정보법에 대한 논의가 언론기관을 빼놓고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보법을 다루는 사람들은 언론기관을 제외하고 법리적 논의를 진행하고 있었고, 언론법 영역에서는 인터넷 기사에 대한 정보법적 접근을 시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언론법과 정보법 간의 학문적 교류가 진행된다면 인터넷 기사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도출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혜승 (다음카카오 정책파트장)

저는 다음카카오에서 포털 정책을 담당하고 있으나 십수 년간 기자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작년에 포털 미디어의 공정성을 주제로 석사논문을 쓰고 연구자로서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발제는 피해구제와 인터넷 게시글이 어떠한 형태로 구분되어야 하는지 체계적으로 정리한 발제였던 것 같습니다. 매우 유익했던 발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몇 가지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실무자이다 보니 주로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포털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이 방송 등 기존 매체보다 많다는 단순 수치를 근거로 인터넷 포털에 대한 새로운 구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포털은 2009년 인터넷뉴스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피해구제 절차에 편입되었습니다. 편입 이후 신청인들은 기

본적으로 신문, 방송에 대한 피해구제를 청구할 때 포털도 함께 청구하고 있습니다. 함께 청구해야만 실효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와 계약한 언론사는 100여 개가 넘습니다. 제휴사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매체가 저희 포털을 통해 기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들 언론 매체에 대한 신청과 동시에 저희 포털에도 피해구제 신청을 하다 보니 겹으로 드러나는 수치가 매우 많아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포털이 상대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오해는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 글에 대해 간략한 의견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허위의 사실에 대한 것은 언론법이든 정보통신망법이든 즉각적으로 처분이 내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사실을 적시한 글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위법한 것으로 여깁니다. 같은 내용에 대한 판단 기준이 정부에 언론매체로 등록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기준이 유효한지에 대해 의문이 생깁니다. 1인 미디어와 같은 디지털 미디어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기사를 수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기사와 정보의 구분이 무의미하게 되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언론에 대한 절대적 신뢰도 많이 떨어진 편입니다. 이런 측면을 감안할 때 블로거가 쓰면 못 믿을 정보이고 5,000개가 넘는 인터넷신문에서 쓴다면 보호해야 할 기사라고 분류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또 복제글이나 링크, 검색결과는 정보통신망법상 인터넷 정보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똑같은 내용의 기사 정보에 대해 처리절차가 다른 것이 타당한지가 논의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보법에 따르면 사실을 적시했다고 하더라도 그 정보가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인터넷상에서 위법한 정보입니다. 이 위법한 정보를 삭제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2항에는 '임시조치'라는 강력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명예훼손 침해와 같은 불법 정보를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2항에 따라 반드시 삭제하거나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제공자가 직권으로 정보를 삭제하는 조치는 거의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명예훼손 등의 사실관계가 명백한 것은 삭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명예훼손 여부를 일반인, 그러니까 포털사업자가 직접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에서도 판결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포털사업자는 주로 임시조치를 내리며, 이러한 임시조치는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요즘 언론법, 정보법 분야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는 것이 잊혀질 권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글의 사례이기 때문에 논의 자체가 국내에서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잊혀질 권리에 관한 판결의 영향력이 큰 것은 결국 적법한 정보도 삭제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잊혀질 권리는 대한민국에서 이미 상당히 많이 보호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임시조치를 통해서 잊혀질 권리가 사실상 인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임시조치는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이 이루어진 불법 정보의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의 임시조치는 누군가가 요청을 하기만 하면 들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정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여부를 따지지 않고 임시조치 조항을 근거로 삭제해 줍니다. 그런데 이 임시조치라는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입니다. 만약 스페인의 곤잘레스가 대한민국에 있었다면 유럽사법재판소까지 가는 고생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임시조치는 2012년 기준으로 23만 건이 내려졌었습니다. 2013년에는 이미 8월에 전년도의 수치를 돌파했고 12월까지는 약 34만 건의 임시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저희 다음카카오도 상당히 많은 정보에 대해 임시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해당 포털에 요청하기만 하면 이미 잊혀질 권리를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새로운 법률적 구제절차를 마련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발제자께서는 정정보도청구나 추후보도청구가 인용된 기사의 링크와 복제글에 대한 게시중단 요청이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례를 들며 별도 구제조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포털은 이미 일반인이 요구하는 임시조치는 형식적 요건이 구비되었다면 전부 수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인에 대해서만 거절하는 경우가 어느 정도 존재하기도 합니다. 사회 고위층이 자신에게 불리한 정보를 삭제하기 위해 임시조치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

입니다.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피해구제 방안으로서의 목적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기 위해 임시조치가 활용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들 때문에 2009년 이후에는 신청인이 공인이라면 허위 사실인 경우 게시중단 요청을 받아들여주지만 사실적시만으로는 게시중단 요청을 받아들여주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재설정했습니다. 물론 원본 기사가 삭제됐거나 수정된 경우에는 정보의 대상자가 공인일지라도 해당 게시물을 삭제, 수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발제에 있어서 가장 흥미로운 내용은 갱신청구권 같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정보들이 검토 없이 삭제되는 것을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갱신청구권이 환영받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론의 경우 기자도 있고 바이라인도 있습니다. 접촉할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터넷 정보 게시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터넷 포털 이용자가 갱신을 청구하려면 게시글을 올린 사람과 접촉할 수단이 필요합니다. 발제문에서도 게시글을 올린 게시자의 정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 포털은 게시자와 접촉할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포털이 더 이상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전화번호 기입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포털은 이용자의 이메일 주소만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포털이 갱신청구를 게시자에게 전달할 유효한 수단이 있느냐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2012년에 헌법재판소가 내린 게시판 실명제 위헌 판결과 이후 주민등록수집이 금지되는 등의 법적 논의에서 나온 것이기에 되돌리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때문에 포털이 이용자의 갱신요청을 게시자에게 전달할 방법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입법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함께 고려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뉴스펀딩 등 새로운 뉴스 미디어에 대한 법적 취급과 관련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 혹은 언론사가 썼는지 아니면 일반인이 썼는지를 기준으로 뉴스 미디어를 구분한 발제자의 의견은 상당히 타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뉴스 미디어와 뉴스 미디어가 아닌 것의 구분이 얼마나 유효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해외에는 미디어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이 많이 등장하

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가장 많은 아이디어가 나온 것이 바로 미디어 스타트업입니다. 그리고 이들 미디어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 ‘버즈피드(Buzzfeed)’라는 미디어 스타트업 회사가 워싱턴 포스트라는 명문 유력지보다 약 3배의 가치로 평가를 받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최근에는 유튜브 동영상만을 가지고 큐레이션을 하는 ‘업워드(Upworthy)’라는 매체가 800만 달러를 투자받기도 했습니다. 때때로 미디어 스타트업들은 몇 천만 달러의 투자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버즈피드를 비롯한 미디어 스타트업들은 신문법에 등록된 언론도 아니며 그들이 생산하는 글은 기사로 여겨지지도 않습니다. 수천만 달러의 투자를 받는 미디어 스타트업들을 살펴보면 기자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글을 쓰지도 않으며, 신문법에 등록되어 있지도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법적 상태는 블로그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미디어 스타트업들은 이미 과급력 있는 언론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등장하는 뉴스 미디어들을 어떻게 법적으로 정의하고 분류할까 하는 고민을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준희 수석부회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 간략하게 코멘트를 달겠습니다. 이준희 수석부회장님께서 신문법상 인터넷 뉴스서비스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 신문법의 등록제는 독일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에만 존재합니다. 신문 및 미디어에 대한 등록제는 세계적으로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디어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제도 두지 않는 나라가 대부분입니다. 또 신문법은 국내에서도 진흥법입니다. 편집권의 독립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신문법이기에 때문입니다. 신문을 진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데 2009년 개정 때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라는 이름으로 포털에 대한 몇 가지 규제 조항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추가된 편집책임자 공개 등의 몇 가지 규제 조항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몇 가지 조항은 포털사업자 입장에서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법에 따르면 포털은 기사와 기사가 아닌 것의 표시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포털사업자는 ‘이것은 뉴스입니다’, ‘이것은 블로그입니다’라는 명확한 구분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뉴스와 일반 정

보 간의 구별이 없을 경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주장을 근거로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하지만 이미 조선일보부터 뉴욕타임즈까지 거의 모든 언론사들은 블로그 콘텐츠와 자사 기자 콘텐츠를 동일하게 배치하고 있습니다. 즉, 언론사의 경우 이미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내는 콘텐츠 큐레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털사업자의 경우 이 규제 조항 때문에 사업개편에 크게 고민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포털에 대한 규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뉴스나 미디어 매체에 대한 규제는 방송법과는 다른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공공재인 주파수를 사용하는 방송에 대해서 규제가 붙는 것은 당연하지만, 신문이나 기타 미디어 매체들은 공공재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경환 (발제자,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

먼저 1인 미디어를 비롯한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터넷 기사와 정보를 구별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정보와 기사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만약 삭제청구나 갱신청구가 입법과정에 들어가게 된다면 법적 안정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사와 정보 간에 어느 정도의 경계선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관할을 분명히 해야 피해구제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정보를 다루는 기관들이 어디까지의 영역을 다루는지 명확하게 설정하지 못해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문제인 것이지 누가 어떠한 정보를 다루는지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정보로 인한 피해구제에 공백이 없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한국에서 이미 잊혀질 권리가 광범위하게 인정된다는 부분에 대해 의견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2항의 ‘임시조치’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포털의 생각과 이용자의 생각은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털 이용자들은 게시중단

이나 임시조치 신청을 했는데 거부당했다는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원본 기사가 삭제되는 경우에 포털의 기사도 삭제된다고 하는데 이 삭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일관성 있게 처리하기 위해 입법과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갱신청구를 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통보를 할 방법이 없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포털이 게시자와 직접적으로 연락할 수단이 없다면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특정한 포맷에 따라서 갱신청구의 내용을 해당 정보 밑에 첨부하는 방식이면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만약 언론중재위원회 등의 기관에서 갱신청구가 인정되었다면 이메일을 통해 게시자가 자체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기간을 제공해 주고, 그 기간 동안 갱신이 되지 않는다면 게시글 밑에 적시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형태가 아니라 하더라도 갱신청구를 집행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법적으로 1,000억짜리 소송을 이겼다고 하더라도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처럼 집행의 문제는 또 다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피해자들이 언론중재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피해구제 기관에 갔을 때 모두 이러저러한 사유로 거절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서로 피해구제를 미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 정혜승 (다음카카오 정책파트장)

임시조치에 대한 답변에 추가적 의견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몇백 명의 모니터링 인원을 자율규제와 신고, 이용자 삭제 요청 처리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곳은 전 세계에서 네이버와 다음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희 다음카카오의 경우 500여 명의 모니터링 요원을 두고 있습니다. 삭제요청 처리 업무를 시작한 지 올해로 9년이 넘어 포털이 내리는 임시조치는 정착되어 비교적 절차가 명확합니다.

또 발제자께서는 법적 안정성을 위해 인터넷 공간의 피해구제에 대한 공백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무수히 많은 매체가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애매한 부분이 많이 존재합니다. 또 새로운 서비스를 만드는 데도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예를 들어 뉴스펀딩과 같은 새로운 미디어를 만들 때 어떠한 법률을 적용시켜야 할까 하는 문제가 이미 발생하고 있기도 합니다.

끝으로 박정호 변호사님의 의견에 간략하게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박정호 변호사님께서서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기사를 구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프라인으로만 존재하는 기사는 이제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사에 대한 링크나 복제물의 존재 여부를 따지는 것이 현실적으로 무의미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미 뉴스 유통에서 종이신문보다 트위터나 페이스북이 더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경우 뉴스 소비의 30%에서 40%가 페이스북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스 매체나 언론사 제공의 뉴스 어플리케이션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전 세계적 트렌드입니다. SNS와 더불어 메신저 서비스에서 이루어지는 정보 교류 역시 확장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 메신저 서비스를 통해 훨씬 더 많은 정보가 교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SNS와 메신저는 개인의 사적 커뮤니케이션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트렌드를 고려할 때 삭제하고 갱신하여 피해를 구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상의 자유라는 시장 속에 존재하는 다양한 플랫폼에서 어떻게 올바른 정보가 더 빨리 확산될 수 있는가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욱 현명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박용상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오늘 발제를 들으면서 삭제청구나 갱신청구에 있어 ‘법적인 근거’를 좀 더 연구하여 발제내용을 보완한다면 어떨까 하는 구상을 해보았습니다.

지난 2013년 대법원은 인격권이 가지고 있던 본질적인 효력을 바탕으로 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인격권은 그 주체가 대세적인 권한을 가지는 권리입니다. 즉, 주체가 모든 사람에 대해서 방해 및 침해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인격권

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격권의 대세적인 효력은 인격권의 주체가 사망하지 않는 한 소멸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 인격권을 근거로 하여 시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기사가 허위라면 해당 기사를 삭제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인격권의 대세적인 효력이 인정되었습니다. 물론 이 인격권 적용이 새로운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일과 같은 국가에서 통용되고 있는 판결을 근거로 해서 적용을 했기 때문입니다.

언론중재법에서는 기간이 지난 사안에 대해서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에 따르면 시간이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인격권의 주체가 기사에 의해 방해 받은 경우 그 방해를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종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법리였습니다. 이러한 법리를 적용시킨다면 오늘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삭제청구와 갱신청구를 피해구제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 판례에 의한다면 삭제청구나 갱신청구를 위한 입법적인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 양승목 (사회자, 언론중재위원,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최근 잊혀질 권리가 삭제될 권리로 전환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보갱신권의 내용은 발제자께서 만들어내신, 지금까지 쓰이지 않은 독창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뉴욕타임즈와 같은 외국의 우수한 언론을 보면 이미 갱신되는 형식의 기사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사가 처음 기사를 올릴 때와 상황이 달라져 기존의 기사가 오보가 되어버리면 기자 스스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 바뀔 때는 물론이고 단어 하나만 바뀌어도 수정사항이 명시됩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기사가 관리된다면 저희들이 오늘 걱정해왔던 문제는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보갱신권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과 같은 논의가 계속 이어진다면 향후 입법화 과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한 언론중재위원회와 발제자, 토론자를 비롯한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MEMO /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 이 책에 게재된 논문의 내용은 우리 위원회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책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15층)

TEL 02-397-3114

FAX 02-397-3029

<http://www.pac.or.kr>